

아름다운 여수, 행복한 시민



제 2019-86호
2019년5월8일(수)

여수시보

시정지표

- 1. 시민공감감동시정
- 1. 균형있는상생경제
- 1. 사람중심나눔복지
- 1. 품격있는문화관광
- 1. 살기좋은정주환경

■ 발행인 : 여수시장 ■ 발행소 : 공보담당관실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3 FAX) 659-5803

목 차

【고 시】

- 여수시 고시 제2019-118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고시 /3
- 여수시 고시 제2019-119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(타용도 전용) /4

【공 고】

- 여수시 공고 제2019-1192호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 /6
- 여수시 공고 제2019-1196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사항 감경공고 /7
- 여수시 공고 제2019-1208호 도로지정공고(여수시 남면 화태리 141,141-4) /8
- 여수시 공고 제2019-1216호 돌산지역 급수 안정화 대책사업 기본 및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공고 /10

회 관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고시 합니다.

허가번호 (허가일)	점용·사용 장소	점용·사용 면적(m ²)	점용·사용 목 적	점용·사용 기 간	피허가자		비고
					주 소	성 명	
2019-9 (2019. 5. 8.)	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산 127번지 지선(광도) 공유수면 외 1개소	1,800 (직접)	해상풍력발전 적지 판단을 위한 풍향 계측기 시험운영	2019. 5. 8. ~ 2023. 5. 7.	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42-,2층(중흥동)	주식회사 삼해개발	

2019. 5. 8.

여 수 시 장

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

「산지관리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, 협의,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
2019. 5. 8.

여 수 시 장

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

1. 관계도면 : 생략 (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,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같음)

가. 임업용산지 해제

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	읍면	리	지번	도엽의 명칭	도면의 번호	구역의 표시
전라남도	여수시	소호동	980-2 전	여수006	NI52-6-10-006	준보전산지

※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「산지관리법」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(<http://www.forestland.go.kr>)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
2. 열람장소

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·서는 여수시청 산림과(☎061-659-4605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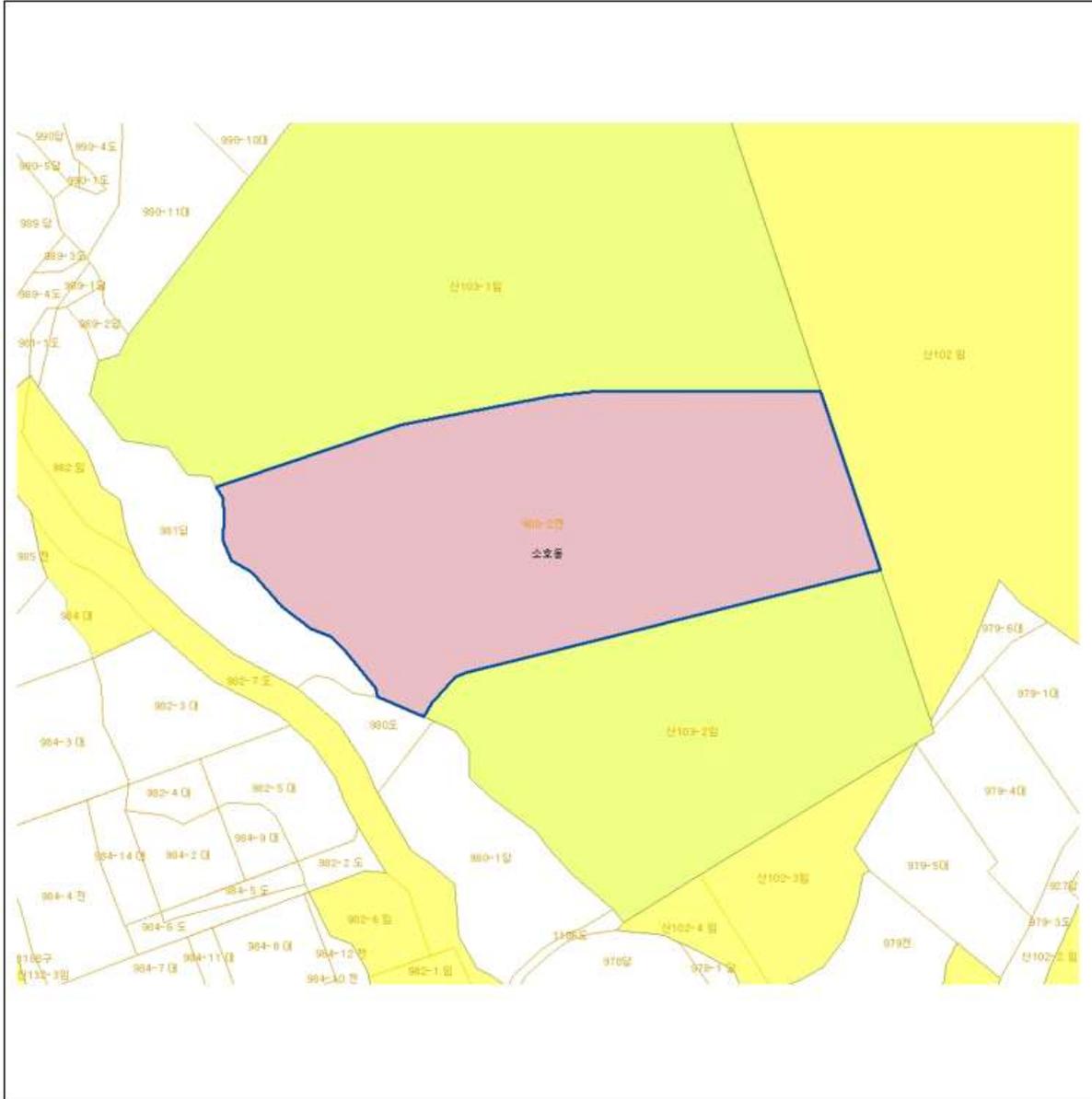
부 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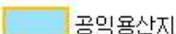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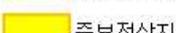
-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.

산 지 구 분 도

(보전산지 해제 [임업용 ▶ 준보전])

(도엽번호 NI52-6-10-006)



범례	
	공익용산지
	지적선
	임업용산지
	행정경계
	준보전산지
	대상지역

- 비고
- 측량의 기준 : 한국측지계
 - 투영법 : 횡단 메르카토르도법 (타원체는 베셀타원체)
 - 높이의 기준 : 인천만의 평균해면
 -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
 -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, 국외반출, 임의개재, 편집을 할 수 없으며,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
 -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음



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980-2 전

전문건설업 폐업 공고

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라 신고사항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0조의2(건설업의 폐업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(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)에 따라 폐업 처리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5월 8일

여 수 시 장

1. 폐업대상 업체

상 호	영업 소재지	폐업대상 건설업종	업종등록법인번호	폐업일자	폐업사유
(주)동양기계기술 (이병*)	여수시 조수영로959(여천동)	기계설비공사업 (여수2015-10-06)	206211-00377**	2019. 5. 8.	사업포기

2. 공고 기간: 2019. 5. 8. ~ 2019. 5. 22.(15일)

3. 공고 장소: 여수시 홈페이지 및 시보

4. 기타

본 신고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(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)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시스템(<http://www.kiscon.net>)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전문건설업 행정처분사항 감경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0조(건설업의 등록기준)를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(영업정지 등) 및 제83조(건설업의 등록말소 등)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 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(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 등) 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건설업 교육 8시간을 이수하였기에 영업정지기간 15일을 감경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(등록말소 등의 공고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(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행정처분 대상 업체

상 호 (대표자)	해당업종	처분내용		처분사유	처분근거
		변경 전	변경 후		
(주)홍익이앤지 (임대*)	기계설비공사업 (여수2016-10-18)	영업정지5개월 (2019. 3. 20 ~2019. 8. 19)	영업정지 4개월15일 (2019. 3. 20. ~ 2019. 8. 4.)	전문건설업등록기준 (기술인) 미달	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및83조제3호

2. 공고 기간: 2019. 5. 8. ~ 5. 22.(15일)

3. 공고 장소: 홈페이지 및 시보

4. 기 타

가. 본 행정처분사항은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5조의3(등록말소 등의 공고)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(www.kiscon.net)에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처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청 도시계획과(☎061-659-4005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5월 8일

여 수 시 장

도로 지정 공고

여수시 남면 화태리 141, 141-4번지 상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·공고합니다.

1. 도로 지정 공고 내역

도 로 위 치		도로길이 (m)	도로너비 (m)	도로면적 (m ²)	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	비 고
계		20.1	9.0	62	도로대장 참조 (허가민원과 비치)	
남면 화태리	141-4	20.1	9.0	62	“	
이 하 빈 칸						

2. 관련도서 : 생략(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)

3. 기타사항

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(061-659-411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9. 5. 8.

여 수 시 장

여수시 공고 제2019 - 1216호

「돌산지역 급수 안정화 대책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」
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 결과 공고

전라남도 공고 제2018-303호 『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』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사항 중 상대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- 붙임 : 1. 사업수행능력 상대평가 위원 명단 1부.
2. 사업수행능력 상대평가 결과 1부.

2019. 5. 8.

여 수 시 장

1. 사업수행능력평가(상대평가)위원 명단

부 서	평가위원	비 고
상수도과	주영길	
해양항만레저과	정종기	
하수도과	정일석	
섬자원개발과	명주완	

※ 평가위원 순서와 아래 평가결과 평가위원 순서와는 무관함.

2. 상대평가 집계표

■ 사업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(배점 3.0점)

1) 기술능력 평가서

구 분	업 체 명									
	1	2	3	4	5	6	7	8	9	10
①	1.4	2.0	1.8	1.6	1.4	1.6	1.8	1.2	1.6	1.6
②	1.6	2.0	1.2	1.8	1.8	1.6	1.4	1.4	1.6	1.6
③	1.8	2.0	1.8	1.2	1.4	1.6	1.6	1.4	1.6	1.6
④	1.6	2.0	1.4	1.8	1.2	1.6	1.8	1.4	1.6	1.6
평균(최고점, 최저점 제외)	1.60	2.00	1.60	1.70	1.40	1.60	1.70	1.40	1.60	1.60

2) 업무관리능력 평가서

구 분	업 체 명									
	1	2	3	4	5	6	7	8	9	10
①	1.0	0.9	0.8	0.7	0.6	0.8	0.8	0.7	0.8	0.9
②	0.8	1.0	0.8	0.9	0.9	0.8	0.6	0.7	0.7	0.8
③	1.0	0.9	0.7	0.8	0.8	0.6	0.8	0.7	0.9	0.8
④	0.8	0.9	0.7	0.8	0.7	0.9	1.0	0.6	0.8	0.8
평균(최고점, 최저점 제외)	0.90	0.90	0.75	0.80	0.75	0.80	0.80	0.70	0.80	0.80

※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